

'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

의안번호

237

제출년월일 : 1994. 5. 21

제안자 : 사 하 구 청 장

1. 제안이유

-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①항의 규정에 의거 '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공유재산 취득(기부채납, 증축)

3. 취득재산의 표시

(단위 : m², 천원)

사 업 명	소 재 지	구 조	면 적	추정가액	건 축 주 (기 부 자)
장 립 2 동 사 증 축	장림동 601번지	철근콘크리트- 스 라 브	129	53,000	김 진 호

4. 관련법규

-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2조 ①항 및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12조 ①항
(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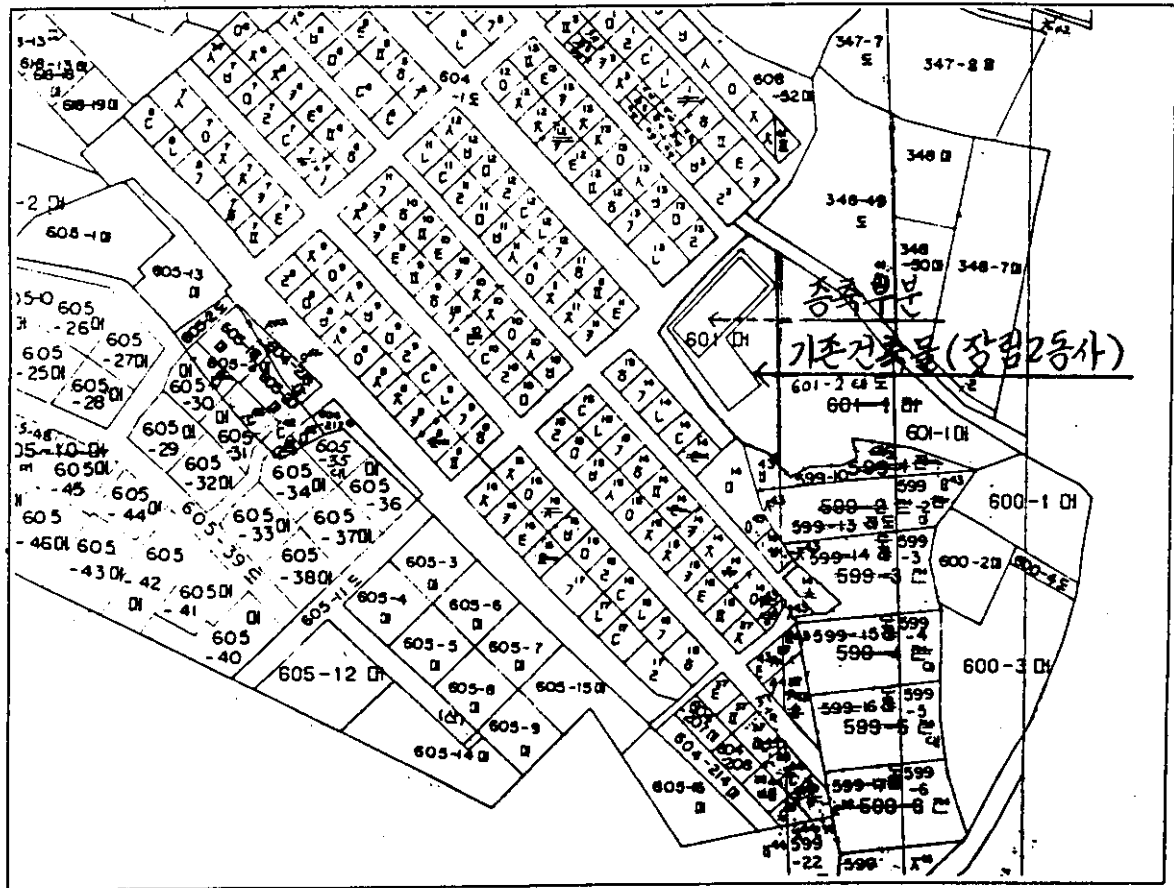
5. 취득사유

- 장림2동사 2층 옥상에 학생들의 공부방으로 활용하도록 기부채납 조건으로 증축하고자 함.

6.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'94. 6 ~ '94. 8
- 사업규모 : 중축(3층) 철근콘크리트-스라브 129㎡
- 사업비 : 53,000천원

7. 현 황도



공유재산관리계획(2/4분기)

1994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(7-1)

회계명 : 일반회계

(단위 : m², 천원)

구 분			상 반 기			하 반 기			합 계			비 고
			건 수	수 량	금 액	건 수	수 량	금 액	건 수	수 량	금 액	
취득	계	토지 건물 기타	1	129	53,000	-	-	-	1	129	53,000	
	1. 매입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	
	2. 교환으로취득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	
	3. 기 타 취 득	토지 건물 기타	1	129	53,000	-	-	-	1	129	53,000	
처분	계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	
	4. 매각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	
	5. 양여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	
	6. 교환으로처분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	
사용 및 대부허가		계 토지 건물 기타										

